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998. 4.28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1998년 4월 15일 제출
- 회 부 : 1998년 4월 15일

3. 제안이유

-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98.2.24) 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종전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고치는 등 용어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같도록 표기 (안 제5조, 제7조 및 별표1)
-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을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안 별표2 중 비교1)

5. 검토의견

-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